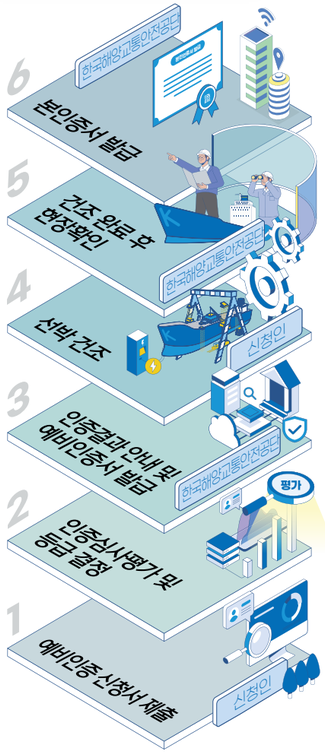
사람과 바다, 희망을 잇다

해양수산부 지원받고 친환경선박으로 환경지켜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발급 절차



온라인 접수 www.친환경선박.kr

문의 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044-330-2251, 2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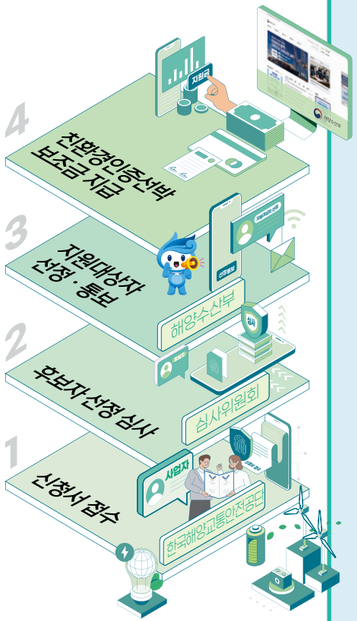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선정 절차

해양수산부

www.mof.go.kr → 알림뉴스 → 공지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www.komsa.or.kr → 소식 → 공지사항



문의 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
044-330-2733, 2736

친환경선박으로 해양 탄소중립 선도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 옆에 정부혁신★

해양수산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 T. 044-330-2733, 2736 해양환경실 T. 044-330-2251, 2555

www.komsa.or.kr

친환경선박으로 해양 탄소중립 선도

★내 옆에 정부혁신★ 대체불가 대한민국

사람과 바다, 희망을 잇다

해양수산부 지원받고 친환경선박으로 환경지켜요!



국가 인증을 받은 친환경선박,
건조부터 인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과 인증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의 미래를 만듭니다.

해양수산부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람과 바다, 희망을 잇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사업개요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내 민간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한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__친환경인증선박__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등급을 획득한 선박

지원일정 및 규모

기간 사업공고 기간 중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박 건조가격 및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선가	등급	보조율(최대)	최대 지원 금액
150억 원 이하	1등급	선가의 30%	35억 원 / 척
	2등급	선가의 29%	35억 원 / 척
	3등급	선가의 28%	35억 원 / 척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1등급	선가의 20%	35억 원 / 척
	2등급	선가의 19%	35억 원 / 척
	3등급	선가의 18%	35억 원 / 척
300억 원 초과	1등급	선가의 10%	35억 원 / 척
	2등급	선가의 9%	35억 원 / 척
	3등급	선가의 8%	35억 원 / 척

※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 사업신청 현황,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지원대상 사업자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__지원대상사업__ 내항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유선사업, 도선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폐기물관리업, 어업, 어획물운반업, 양식업,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 친환경선박 건조증명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제1항)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출한 공정계획표 및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월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해서는 안되며,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 시행지침상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고,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 선박이 건조된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이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조사 및 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협조해야 함

사람과 바다, 희망을 잇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제도개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친환경선박의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

친환경선박의 구분

-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사용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 환경친화적 에너지(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 연료와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추진선박

인증 심사 · 평가 기준

- 친환경 연료 사용 비율
-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저감률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초과감축률
- 적용기술의 국산화율
- 인증받은 환경친화적 기자재 사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27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요령」 별표2 참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홈페이지 Search... www.친환경선박.kr 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고
- **문 의 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T. 044-330-2251, 2555